

## 【 8 】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7. 30.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 □ 폐지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위임 근거가 없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에서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마련 시행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주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1991. 2. 14]  
[조례 제1377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처분의 균형과 공평을 기할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부과대상자)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은 자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은 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 자

제 3 조(처분) ①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처분청 또는 검사기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그 시정을 해제하지 하였거나, 그의 또는 종래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보다 가중 부과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의 기준보다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 ②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을 하한선으로 하여 할산한 부과기준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과한다.
- ③군수가 처분을 행하였을 때에는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을 피처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청탁) 군수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주류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5 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승부할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07회 자국경제 양주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자는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낸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날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날부하지 않을 때에는 날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날부기간을 지정한 등록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날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날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날부하여야 한다.
- ③ 수납기관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날부받을 때에는 자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날부할 수 없다.

제 6 조(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풀드) ①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준용) 과태료를 날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정수한다.

부 칙 (1991. 2.14 조례 제1377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

## 제10회 자본경제 양주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회)

##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범위

부과 대상	부과 기준	부과 기준			부과 대상
		1회	2회	3회 이상	
<b>1. 안전관리 규정</b>					
가. 사업개시 때는 사용설명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고발 제 11 조 제 1 항 액 10 조 제 1 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나. 안전관리 규정의 변경 내용을 위반한 때	고발 제 11 조 제 2 항 액 10 조 제 2 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다. 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충족하지 않고,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고발 제 11 조 제 4 항 액 10 조 제 4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라. 제조공정 및 자체설사 방법 등을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고발 제 11 조 제 6 항 액 10 조 제 3 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b>2. 안전관리자</b>					
가. 안전관리자가 경영, 제조 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도 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고발 제 15 조 제 3 항 액 14 조 제 3 항 액 29 조 제 3 항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b>3. 보험가입</b>					
가. 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고발 제 25 조 제 1 항 액 33 조 제 1 항	60일 미만 30만원	60일 이상 60만원	180일 이상 100만원	금수

(추 2)

## 제10편 차별경제 양주군 가스사업 차별사용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정수준례

의무 부과내용	부과 금액	차별내용			부과 금액
		1회	2회	3회이상	
4. 자체결사					
가.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 용기등에 대한 자체결사	고법 제 12 조 제 1,2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디실시 또는 자체결사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액법 제 11 조 제 1,2 항				
5. 시중의 자체결사					
가. 시중자가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한 때에는 등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거 자체 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액법 제 16 조 제 1 항 도법 제 13 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
6. 공급자의 의무 등					
가. 가스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가스를 계속하여 공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고법 제 10 조 제 3 항 액법 제 9 조 제 3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나. 가스수요자가 그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 10 조 제 4 항 액법 제 9 조 제 4 항	3만원	6만원	10만원	"
7. 시설, 용기의 안전 유지					
가. 가스용기를 등자부령에 의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 13 조 제 4 항 액법 제 12 조 제 4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금수
나. 충전대장 또는 관대대장 을 작성하여 등자부령에	고법 제 13 조 제 3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추 2)

## 제10회 지역경제 양주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부과 원칙	부과 금액	처분			총 부과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 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기록한 때	액별 제 12 조 제 3 항				
8. 사용신고 등					
가. 가스사용자가 통지부정 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 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 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	고법 제 20 조 제 3 항 액별 제 29 조 제 3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나. 가스사용신고 대상자들 는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는 경공공사를 원공한 력에는 사용전에 원공경 사를 받아야 하는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정기점사를 받지 아니한 때	고법 제 20 조 제 4 항 액별 제 29 조 제 4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9. 혁가관청등의 조치					
가. 의약외방 공동체 의약관 법	그법 제 24 조 액별 제 32 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0. 보고, 접수 등					
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 법률에 의한한 때	고법 제 26 조 제 1 항 액별 제 35 조 제 1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나. 보조기스사업자에게 의한 보고를 하게 하였으 나 이를 이행치 아니하거 나 허위로 보고한 때	트벌 제 41 조 제 2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1. 가스시설의 사용관리					
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 상의 공사에 관한 시공관 리를 하고자 하는자가 등	액별 제 15 조 제 4 항 트벌 제 12 조	50만원 100만원	(고의가 아닌 경우) (고의인 경우)		"

제10편 지정 경제 양주군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위반 내용	근로 률	처 벌 금	처 벌 금 총 액			부과 관자
			1회	2회	3회 이상	
률을 하지 아니할 때	제 4 항					
11. 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본경공사를 할 시에는 시설을 사용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시공자)로 하여금 공사를 사용 관리하지 않았을 때	액별 제 15 조 제 1 항 드별 제 12 조 제 1 항	10만원 30만원 100만원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0만원	"	
12. 가스공급의 두	액별 제 25 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가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공급지역안에 있는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허가 받은 공급지역 외의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경우						
13. 공급시설의 일시 할격	액별 제 19 조 제 2 항 드별 제 16 조 제 2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30만원 50만원	50만원	"	수
일시 할격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할격으로 된 시설은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14. 관대의 계한						
가. 통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가스공급방법에 어긋나는 때	액별 제 24 조 제 3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나. 도지사는 시장, 군수 가 정하는 지역 또는 건물안에서 용기에 의한 가스를 공급할 때	액별 제 24 조 제 4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5. 시공기록증의 보증	액별 제 17 조 드별 제 14 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시공자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본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동자부령에 정하는						

(추 2)

## 제10回 차로 경제 광주군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청수조례

부과 금 액 내 용	부 과 금 액 내 용	총 부 과 금 액			부과 금 액 내 용
		1회 부 과 금 액	2회 부 과 금 액	3회 이 상 부 과 금 액	
화재 위험성 시정기록 및 해당 조건 기록 필요한 사항 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5.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철단공급사업 자,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 구정의 승인을 얻거나, 표 경한 대 중업소, 사무소의 설치 위치에 공급 구정 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액별 제 28 조 도별 제 22 조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7. 가스사용시설의 위험 예 방 조치 등					
가.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기 준 및 기술기준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결과 부적 합시설에 대한 개선(정기 점검)을 단행하지 아니한 때	도별 제 28 조 제 2 항	10만원	30만원	50만원	는 수
나. 가스수요자가 그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을 받고 그 이행하지 아니한 때	도별 제 28 조 제 3 항	3만원	6만원	10만원	"

※ 약어

- 고발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 액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 도발 : 도시가스 사업법

제10편 지역경제 양주군가스사업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륙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년 월 일까지 당 (원)을 고에 날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위의 날부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제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1. 과태료 날부 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양 주 군 수 (인)

(추 2)

(별지 제2호서식)

납 입 고 지 시

제 호	19 년도 일 반 회계	과주관
(원)	(정)	
(복)	W	
[인급]		
단 상기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19 년 월 일	
납부장소	군	금고
19 년 월 일		기회

군 분임재업정수관이 발행한 이 담  
임고지서는 군금고로 빌려 보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 수 편 통지 시

제 호	19 년도 일 반 회계	과주관	
(원)	(정)		
(복)	W		
[인급]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으로 통지합니다.			
19 년 월 일	군	금고	
	금	기회	
납입지			
정수관	(인)	최금지	(인)
수입금 출납원	(인)	기 정	(인)

영 수 편

제 호	19 년도 일 반 회계	과주관	
(원)	(정)		
(복)	W		
[인급]			
단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19 년 월 일	군	금고	
	금	기회	
납입지			
정수관	(인)	최금지	(인)
수입금 출납원	(인)	기 정	(인)

제 3권 지역경제 양주군-가스사업 관리 시·군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대구광역시 과정수조례

한국의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을 통해 세계관과 인생관을 제시하고 있다.

( ३०३ वा ३१४ वा )

그 이전에 체온이 높아지면 그 때 고름(은)이나 그 다음에 체온이 높아지면 그 때 고름(은)

한국의 문화는 그 자체로 세계적인 문화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전통 예술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卷之三

## 일 주 운 수 (인)

(卷 2)

## 〈한국 철학의 주제〉

## 파트로 차운에 대한 이의신청서

( 2 )

卷之三

제 107회 제 1차 회기 제 2차 본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 (한국 철도부 서식)

제10조(부록) 부록 제1호 부록 제2호 부록 제3호

2. 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다른 학생들의 경험을 비교·분석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 정      치      편      수      (이)

(三 2)

제 10 조(부수로 정과 부수로 한 과세 대상 및 사업자 종류에 따른 가스사업자 관리) 양주군 가스사업자 관리 제도

# 中華書局影印

## ● 高壓ガス安全管理法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1983 · 12 · 31	法律第3703號
改正 1993 · 3 · 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3 · 12 · 27	法律第4625號
1995 · 8 · 4	法律第4966號
1996 · 12 · 12	法律第5184號
1997 · 12 ·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8 · 1 · 13	法律第5505號(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 관한法律制定등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9 · 2 · 8	法律第5828號

第1條 (目的) 이 법은 高壓ガス의 製造·貯藏·販賣·運搬· 사용과 高壓ガス의 容器·冷凍機·特定設備등의 製造 및 檢查등에 관한 事項을 정함으로써 高壓ガ스로 인한 危害를 防止하고 公共의 安全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適用範圍) 이 法의 適用을 받는 高壓ガス의 종류 및 별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 · 3 · 6, 95 · 8 · 4, 99 · 2 · 8>

1. “貯藏所”라 할은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一定量이상의 高壓ガス를 容器 또는 貯藏탱크에 의하여 貯藏하는 일정한 場所를 말한다.
2. “容器”라 할은 高壓ガ스를 充填하기 위한 것(附屬品을 포함한다)으로서 移動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貯藏탱크”라 할은 高壓ガ스를 貯藏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位置에 固定設置된 것을 말한다.
4. “冷凍機”라 할은 高壓ガ스를 사용하여 冷凍을 하기 위한 機器로서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冷凍能力이상인 것을 말한다.
5. “特定設備”라 할은 貯藏탱크 및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高壓ガス關聯設備를 말한다.

第4條 (高壓ガス의 製造許可등) ①高壓ガス를 製造(容器에 充填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高壓ガ스製造者”라 한다)는 그 製造所마다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 第32編 電氣·ガス 第3章 가스 高壓ガス安全管理法

5. 第13條의 2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向上計劃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16條第1項·第2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7. 第17條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41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3·12·27. 95·3·4. 99·2·8>

1. 第4條第2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高壓가스를 製造한 者
2.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

第42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3條第2項·第22條第1項 또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6條의 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4.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回收 또는 公表命令에 위반한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全文改正 99·2·8)

第42條의 2 (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 내지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本條新設 99·2·8)

第43條 (過怠料)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4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한 사항을 변경한 者
2. 第11條第1項·第3項, 第15條第3項 또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1條第4項 또는 第13條의 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高壓가스의 製造·貯藏 또는 販賣施設을 사용한 者
5. 第28條의 2의 規定에 위반하여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者

(주 107)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11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安全管理規程의 實施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偽로 作成한 者
2. 第10條第3項·第13條第4項 또는 第20條第3項·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③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11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容器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者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市·道知事·市長·郡守 또는 區處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稴課·徵收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44條 내지 第46條 刪除 <99·2·8>

####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機器製造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冷凍設備에 사용하는 機器의 製造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冷凍機의 製造許可 또는 特定設備의 製造許可(許可範圍에 特定設備의 製造가 포함된 者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特定設備製造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特定設備을 製造하고 있는 者(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冷凍設備에 사용하는 機器의 製造許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다)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

개정 1999. 6.30

대통령령령 제16453호

# 가스3法關聯 令 · 規則 · 告示 改正解說集

1999.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규칙중 개정령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고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 규칙중 개정령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고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규칙중 개정령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고시



한국가스

(<http://www>)

취 행	개 정 원	개 정 사 유
<p>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다.</p> <p>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동기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별설비의 검사</p> <p>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및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별설비의 제작사</p> <p>3. (생 략)</p> <p>〈신 설〉</p>	<p>1. ----- 산업자원부령----- 2. ----- 산업자원부령-----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기검 사준 기인상기소 또는 통상기소와의 기준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진출물의 배출방법·방통 제조시설에 대한 징기검사</p>	<p>○ 기인상기소 또는 통상기소를 대체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소위 현상이 적인 프레온냉매를 사 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냉동제조시설의 징 기검사업무를 검사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p>
<p>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②(생 략)</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제 대표의 권리로 정한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 위의 동기와 그 결과물을 친직히 알아 한다.</p> <p>〈신 설〉</p>	<p>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②(현행 과 같음)</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제 대표의 권리로 정한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 위의 동기와 그 결과물을 친직히 알아 한다. 그 부록기준을 면제·4의 같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위 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최소 등을 친직히 의 세3정의 규정에 의한 단액의 2분의 1의 벌 금으로에서 이를 기준 또는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기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p>	<p>○ 과태료 부과금에 및 징수 절차등에 관한 사항 을 구체화하여 신호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p>

행	개정안	개정사유
<p>&lt;신설&gt;</p> <p>[별표 2] 과정금을 부과하는 위민생안의 종별 과정금율에 대한 개정안</p>	<p>액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대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기대료의 징수절차는 산입자원부정으로 정한다.</p> <p>[별표 2] 과정금 신정기준(제7조 제1항 전문) 1. 일반기준</p> <p>기.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정금은 인건 배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기준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인건 배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 배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그년간의 총 배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배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 배출액을 환산한다.</p> <p>나. 인건 배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방동제조기(방동 또는 방정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를 예외한다) 또는 고임기수지상자의 경우에는 고임기수의 제조·가설·교체 기준으로 하여 제2호기준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p> <p>2. 과정금 기준</p> <p>기. 인건 배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정금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금 신정기준을 위민사업자의 정지기간에 대체되는 배출금액 또는 사업장 규모에 비례도록 하여 정지 기간의 이익금과 과정금의 현형 유지</li> </ul>

현 행	개정안	개정시유												
<신_설>	10.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 진한 사업장내의 고압가스시설에 고압가 스가 있는 경우에는 인천관리원을 신임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허가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을 위한 차 소원 인력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조정												
<신_설>	11. 법에 의한 허가를 받기나 등록을 한 시 설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또 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용시설의 하도의 사업장내에 있는 경우 사용시설의 안전관 리자는 이를 선임하기 아니할 수 있다.	○ 같은 사업장내에 하기 또는 등록시설과 사용 시설이 있는 경우 사용시설인천관리사제용의 무 조정												
<신_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금액(제26조제3항削除)													
	<table border="1"> <thead> <tr> <th>위반 행위</th> <th>근거법령</th> <th>과태료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민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민경한 자</td> <td>법 제43조 제1항 제1호</td> <td>1,500만 원</td> </tr> <tr> <td>2. 법 제11조제1항·제3 항, 법 제15조제3항 또 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td> <td>법 제43조 제1항 제2호</td> <td>1,500만 원</td> </tr> <tr> <td>3.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 반한 자</td> <td>법 제43조 제1항 제3호</td> <td>1,500만 원</td> </tr> </tbody> </table>	위반 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민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민경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1,500만 원	2. 법 제11조제1항·제3 항, 법 제15조제3항 또 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1,500만 원	3.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 반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1,500만 원	<p>○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실 효성 있게 과태료 부과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p>
위반 행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민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민경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1,500만 원												
2. 법 제11조제1항·제3 항, 법 제15조제3항 또 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1,500만 원												
3.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 반한 자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1,500만 원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4. 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범 제43조 제1항 제4호 1,500만 원	
	5. 범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기스 인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범 제43조 제1항 제5호 1,000만 원	
	6. 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범 제43조 제2항 제1호 800만 원	
	7. 범 제10조제3항·범 제13조제4항 또는 범 제2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범 제43조 제2항 제2호 800만 원	
	8. 범 제24조의 규정에 외한 명령에 위반한 자 범 제43조 제2항 제3호 500만 원	
	9. 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외한 명령에 위반한 자 범 제43조 제3항 제1호 300만 원	

형 례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10. 뷔 제11조의2의 규정 에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table border="1"> <tr> <td>법 제43조 제3항 제2호</td><td>200만원</td></tr> </table>	법 제43조 제3항 제2호	200만원	
법 제43조 제3항 제2호	200만원			

##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制定	1983 · 12 · 31	法律第3704號
改正	1991 · 11 · 30	法律第4412號
	1993 · 3 · 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5 · 8 · 4	法律第4967號
	1996 · 12 · 12	法律第5185號
	1996 · 12 · 30	법률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1997 · 12 · 13	法律第5453號(行政節大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 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8 · 1 · 13	法律第5505號(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 관한法律制定 등에 따른公認會計士法 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9 · 2 · 8	法律第5829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液化石油가스의 充填·貯藏·販賣·사용 및 가스用品의 安全管理에 관한 事項을 정하고 液化石油가스事業을 合理的으로 調整함으로써 液化石油가스를 적정히 供給·사용하게 할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 · 3 · 6, 95 · 8 · 4, 99 · 2 · 8>

1. “液化石油가스”라 함은 프로판·부탄을 主成分으로 한 가스를 液化한 것(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液化石油가스充填事業”이라 함은 貯藏施設에 貯藏된 液化石油가스를 容器 또는 車輛에 固定된 탱크에 充填(配管을 통하여 다른 貯藏탱크에 移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供給하는 事業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充填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填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3.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이라 함은 液化石油가스를 一般의 需要에 따라 配管을 통하여 燃料로 供給하는 事業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4.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이라 함은 容器에 充填된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하는 것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5. “가스用品製造事業”이라 함은 液化石油가스 또는 都市ガス事業法에 의한 燃料用ガ스를 사용하기 위한 機器를 製造하는 事業을 말하고, “가스用品製造事

第36條의2 (청준) 許可官廳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준을 실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12·13)

第37條 (手數料등)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產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1. 第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產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教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3. 第10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者
4.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ガス의 元摸·集團供給·販賣·貯藏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에 따르는 完成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
5.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ガ스의 元摸·集團供給·販賣·貯藏施設 또는 가스用品製造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의 完成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
6.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
7.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8.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ガ스使用施設의 完成検査 또는 定期検査를 받고자 하는 者
9.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全文改正 95·8·4)

第38條 内지 第40條 刪除 (96·12·12)

第41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 중 다음 각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1. 第1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준수여부의 확인 및 評價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検査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検査
4. 第2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定期検査 및 隨時検査
5. 第2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輸入ガス用品의 檢査
6.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중인 가스用品의 収集·検査
7.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ガス의 使用施設의 完成検査
8.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教育의 實시
9. 檢査機關이 實시하는 檢査業務에 대한 指導·확인

③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중 다음 각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社 또는 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1. 第2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의 檢査. 다만, 輸入ガス用品의 檢査를 제외한다.
2.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ガス의 使用施設의 定期検査

(全文改正 99·2·8)

第41條의2 (처분의 요구등) ①公社는 第3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故調査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權限의 행사중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8·4)

第41條의3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櫛制)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41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仁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本條新設 99·2·8)

第42條 (都市ガス事業法의 準用) 都市ガス事業法 第6章(第31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은 液化石油ガス集團供給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2條의2 (石油事業法의 準用) 石油事業法 第23條의 規定은 液化石油ガ스充填事業者 또는 液化石油ガ스販賣事業者의 液化石油ガ스販賣價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

液化石油ガス特定使用者의 安全管理에 관계되는 葉務를 행한 者

9. 第34條의 3의 規定에 의한 제한에 의한하여 液化石油ガ스를 燃料로 사용한 者  
(全文改正 99. 2. 6)

第48條 (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다.

1. 第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営業所의 設置申告를 하지 아니한 液化石油ガス元填事業者
2.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許可申請에 제출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4.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가스用品製造事業者
5.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變更命令를 이행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6.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事業者등 또는 液化石油ガ스特定使用者
7.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事業者등 또는 液化石油ガ스特定使用者
8.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한 事業者團體·事業者등·液化石油ガ스特定使用者 또는 施工者

② 그을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液化石油ガ스元填事業者·液化石油ガ스團體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ガ스販賣事業者
2.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實施記錄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者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ガ스 供給方法에 위반한 液化石油ガ스元填事業者 또는 液化石油ガ스販賣事業者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液化石油ガ스의 使用施設 및 가스用品을 갖추지 아니한 液化石油ガ스使用者
5.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検査 또는 定期検査를 받지 아니한 液化石油ガス特定使用者
6.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事業者등·液化石油ガ스特定使用者 또는 液化石油ガ스使用者
7.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事業者등·液化石油ガス使用者

特定使用者 또는 液化石油ガス使用者

8.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事業者團體·事業者 등·液化石油ガス特定使用者 또는 施工者

9.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事故 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事業者 등 또는 液化石油ガス特定使用者

③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液化石油ガ스使用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產業資源部長이·관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稅課·徵收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者は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者が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滞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99·2·8)

第4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的代理人·使用者 기타의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的業務에 관하여 第43條 내지 第47條의 違反行為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5·3·4>

第50條 및 第51條 刪除 <99·2·8>

###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기타 가스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기타 가스事業許可를 받은 者중 가스充填事業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ガス充填事業許可를, 가스販賣事業者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ガ스販賣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簡易가스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 가스3法關聯 令 · 規則 · 告示 改正解說集

1999.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규칙중 개정령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고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 규칙중 개정령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고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규칙중 개정령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중 개정고시

**KGS**

한국가스

(http://www.kgs.or.kr)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

개정 1999. 6.30

대통령령령 제16450호

현 행	개 정 암	개정 사유
<p>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애화식유기소사용신고지증통상신입부령이 정하는 기로 한다.</p> <p>③(생략) ④(생략)</p> <p>제24조(지도·감독) ①(생략)</p> <p>②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분기기 끝나는 날부터 1월이내에 통상신입부정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신입부정관의 조장명령의 이행사항</li> <li>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등 또는 애화식유기소사용신고지증통상신고증에 대한 치분 현황</li> </ol> <p>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시·도지사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애화식유기소충진사업 및 애화식유기소집단공급사업의 허가</li> <li>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등록의 관리</li> </ol>	<p>-----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화식유기소사용신고지증통상신입부령이 정하는 기로 한다.</p> <p>③(통상신입부령 명칭변경) ④(통상신입부정관 명칭변경)</p> <p>제24조(지도·감독) ①(통상신입부정관 명칭변경) ②-----</p> <p>-----신입자원부정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입자원부정관-----</li> <li>-----애화식유기소사용신고지증-----</li> </ol> <p>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41조제1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ol> <p>-----</p>	<p>○ 애화식유기소사용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애화식유기소사용신고지"를 "애화식유기소복정지"로 8이 변경</p> <p>○ 정부직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통상신입부정관"을 "신입자원부정관"으로 8이 변경</p> <p>○ 애화식유기소사용신고 제도 폐지에 따라 8이 변경</p> <p>○ 명령 조문 변경으로 정리</p> <p>○ 법 제15조의2(시 공사의 등록등)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p>

현 행	개정안	개정시유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	3. ----- -----	○ 법 제27조(공급규정의 변경명령)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4.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 별령	<삭 제>	○ 법 제27조(공급규정의 변경명령)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광사에 위탁한다.	②----- --제41조제2항----- -----	○ 법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로 위탁된 권한을 명시함(법제처의 법령 정비사항)
1. (생 략)	1. (행행과 같음)	
2. 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자체감사의 실시에 대한 감독 회원	<삭 제>	
3. · 4. (생 략)	3. · 4. (행행과 같음)	
5.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수입가·소 요품의 짐산	5.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 가스용품의 짐산	
6. (생 략)	6. (행행과 같음)	
7.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애화식용기 ·스사·신고시설의 완성검사	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점식용기 ·설의 완성검사	
8. (생 략)	8. (행행과 같음)	
9.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인 전교육계획·심사	<삭 제>	
10.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삭 제>	
11. (생 략)	11. (행행과 같음)	

취 행	개정안	개정시유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사 또는 감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감시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1. (생략)</p> <p>2.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애화석유가스 산·용산고산실의 징기감사</p> <p>④ (생략)</p> <p>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원행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원행시신을 명시한 과태료부과통지서를 발부함으로써 생한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치불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 제41조제3항----- ----- ----- ----- ----- 1. (한행과 징음)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성식 8식 신의 징기감사 ④ (한행과 징음)</p> <p>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당해 원행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원행시신·과태료금액·동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낸부한 뒤 대표자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치불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 법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로 위탁된 권한을 맴시원(법제처의 법령 장비사항)</p> <p>○ 과태료 부과 절차를 명확히 함</p>

제 : 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괴 태료의 금액을 정원에 있어 시는 당해 위민행 위의 동기와 그 결과물을 친직히야 한다.</p> <p>〈신_설〉</p>	<p>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괴 태료의 금액을 정원에 있어 시는 당해 위민행 위의 동기와 그 결과물을 친직히되, 그 결과 기준을 발표_3과 같다.</p>	<p>○정원한 위민행위에 대한 괴태료가 시·도 별로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원 한 부과기준을 마련함</p>
<p>〈신_설〉</p>	<p>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위 민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친직하 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 위안에 이를 기준 또는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준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8조의 규 정에 의한 괴태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괴태료의 징수절차는 신고서 일부령으로 정 한다.</p>	<p>○위민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기준 치분할수 있는 괴태료의 금액범위를 정함</p>
<p>〈신_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괴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전사무처리규칙 에 준하여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p>
<p>〈신_설〉</p>	<p>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p> <p>②(안전관리인의 추가신임에 관한 경제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 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애하식유가스충전사업자 는 이 영 시행후 3일 이내에 발표 2의 개정규정 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원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第82回 - 附錄) 139</p>

## 第3章 가 스

### ● 都市ガス事業法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全文改正	1983. 12. 31	法律第3705號
改正	1993. 3. 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5. 1. 5	法律第4887號
	1995. 8. 4	法律第4965號
	1995. 12. 29	法律第5092號(石油事業法)
	1996. 12. 30	법률 제5230호(건설산업기본법)
	1997. 12. 13	法律第5453號(行政監督大法의施行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일부에 관한 법률)
	1998. 1. 13	法律第5505號(金融監督機関의設置등에 관한法律制定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9. 2. 8	法律第5823號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都市ガス事業을 通過的으로 調整·육성하여 使用者の 利益을 보호하고 都市ガス事業의 전진한 발전을 도모하여, 가스供給施設 및 가스使用施設의 設置·유지 및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公共의 安全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 2. 8>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 3. 6. 95. 8. 4. 99. 2. 8>

1. “都市ガス事業”이라 할은 需要者에게 燃料用ガス(이하 “가스”라 한다)를 供給하는 事業(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精製業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都賣事業 및 一般都市ガス事業을 말한다.
2. “都市ガス事業者”라 할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ガス事業의 許可를 받은 가스都賣事業者 및 一般都市ガ스事業者를 말한다.
3. “가스都賣事業”이라 할은 一般都市ガス事業者의 者가 一般都市ガス事業者 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大量需要者에게 天然ガ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供給하는 事業을 말한다.
4. “一般都市ガス事業”이라 할은 가스를 製造하거나 가스都賣事業者로부터 天然ガ스를 供給받아 一般의 需要에 따라 配管으로 需要者에게 供給하는 事業을 말한다.

(주 107)

## 第32編 電氣·가스 第3章 가스 都市ガス事業

第43條의4 (청문)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全文改正 97·12·13)

第44條 (手數料등) ①第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ガス事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教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15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가스 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의 施工監理를 받고자 하는 者
2. 第1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가스使用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工事의 完成 檢查를 받고자 하는 者
3. 第17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가스 供給施設 또는 特定가스使用施設의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4. 第26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 管理規程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者
5. 第30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 教育을 받고자 하는 者
6. 第30條의4第1項(第39條의5에서 進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가스 安全影響評價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者

(全文改正 99·2·8)

第44條의2 (위반사실의 통보등) ①公社는 第4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故調查 또는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權限의 행사중 이는 또는 이는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위반사실의 根據資料를 갖추어 이를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8)

第45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

守·區廳長(自治區의 区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한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중 다음 각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圖面 繪本의 접수
2. 第15條第1項 本文(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監理 및 完成檢査
3. 第17條第1項 本文(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4. 第26條第5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준수여부의 확인 및 評價
5. 第30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教育의 실시

③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중 第17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特定가스使用施設에 대한 定期檢査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 또는 高壓ガス安全管理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8)

第45條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懲罰)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4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仁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本條新設 99·2·8)

第4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하여는 高壓ガス安全管理法과 液化石油ガ스의 安全 및 事業管理法을 適用한다. (改正 99·2·8)

②石油事業法 第9條의 規定은 都市ガス事業者가 가스를 販賣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第47條 削除 (99·2·8)

## 第9章 罰 則

第48條 (罰則) ①都市ガス事業者の 가스供給施設을 損壞하거나 그 機能에 障碍를

## 한·총

4. 第29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都市ガス事業者, 特定ガス使用施設의 使用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5. 第29條第2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都市ガス事業者, 特定ガス使用施設의 使用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全文改正 99·2·8)

第53條의2 (罰規定) 法人の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8條 내지 第5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本條新設 99·2·8)

第54條 (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11條第2項 또는 第3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を 한 都市ガス事業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2. 第11條第2項 또는 第39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고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を 한 都市ガス事業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3.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한 非常供給施設을 設置한 후 이를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都市ガス事業者
4.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一般都市ガス事業者
5. 第18條第2項 및 第39條의4의 規定에 의한 가스의 供給計劃 또는 需給計劃을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都市ガス事業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6.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都市ガス事業者
7.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一般都市ガス事業者

## 都市ガス事業者

8. 第26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하지 아니한 都市ガス事業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の 가스供給施設設置者
9. 第26條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變更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都市ガス事業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の 가스供給施設設置者
10. 第26條第4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實施記錄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都市ガス事業者 및 그 從事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の 가스供給施設設置者 및 그 從事者
11. 第29條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12. 第30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教育을 받지 아니한 者
13. 第30條第2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教育을 받지 아니한 都市ガス事業者·施工者·特定ガス使用施設의 使用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の 가스供給施設設置者
14. 第43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반하여 保険에 加入하지 아니한 都市ガス事業者·特定ガス使用施設의 使用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の 가스供給施設設置者

②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 2. 8)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告白한 承認者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市ガス事業者에게 工事의 施工內容을 알려주지 아니한 施工者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工者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에게 施工할 내용에 대한 檢討結果를 알려주지 아니한 都市ガス事業者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工記錄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施工者

5. 第14條第2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工記錄등의 寫本을 都市ガス事業者·特定ガス使用施設의 使用者 또는 都市 가스事業者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施工者
6. 第14條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完工圖面의 寫本을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都市ガス事業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7. 第15條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責任監理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都市ガス事業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8.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가스供給施設을 사용한 都市ガス事業者
9. 第41條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故發生事實을 소송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都市ガス事業者 또는 都市ガス事業者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츠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9·2·8>

1. 第11條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施工者
2. 第30條의5第2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協議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츠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逕課·徵收한다. <改正 95·1·5, 95·8·4, 99·2·8>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츠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5, 95·8·4, 99·2·8>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產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1·5, 95·8·4, 99·2·8>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 第32編 電氣·가스 第3章 가스 都市ガス事業法

아니한 때에는 國稅清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第55條 및 第56條 刪除 &lt;99·2·8&gt;

## 第57條 刪除 &lt;95·1·5&gt;

##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84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②(一般都市ガス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ガス事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都市ガス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供給規程 및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規程 및 保安規程의 承認을 얻은 者는 第20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 및 安全管理規程의 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附 則 &lt;93·3·6&gt;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 附 則 &lt;95·1·5&gt;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 (認·許可등에 관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許可·認可·승인·非을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3條 (韓國가스公社에 대한 都市ガス事業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韓國가스公社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ガス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韓國가스公社는 第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商工資源部長官으로부터 가스都賣事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가스施設工事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計劃의 승인을 얻은 것중 同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項으로 된 것은 同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項을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가스施設工事의 施工內容 통보등에 관한 適用例) 第12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施工되는 工事부터 이를 적용한다.

# 가스3法關聯 侖·規則·告示 改正解說集

1999. 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규칙증 개정령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증 개정고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 규칙증 개정령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증 개정고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규칙증 개정령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증 개정고시

**KGS**

한국가스

(<http://www.kgs.or.kr>)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개정령

개정 1999. 6.30

· 대통령령령 제16449호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령 조문별 대비 개정사유

회 원 해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내통령령 제16,449호(1999. 6. 30.,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신설·신설지인부증권 또는 템플리스·케이시점·도자서(이하 "시·도자서"라 한다)기·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의 여부</li> <li>2.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함에 따른 위험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li> <li>3. 당해 지역의 도시가스의 수급상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의 여부</li> </ol> <p>제3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가스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실적)가 우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특별시장·광역시장·도자서를 "시·도자서"로 약칭하고 있던 것을 제2조제2항의 삭제로 세로이 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법 개정으로 제27조제1항의 자체검사실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정기검사의 면제기준을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와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li> </ul>

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2)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 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기입금액 은 신규사업자로 정한다.</p> <p>③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기입 설치 및 통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 고에 맹사인수생사에 대한 지원명령·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 감독위원회의 험의하여 정한다.</p> <p>제14조(인천권리투자·경고대상 등) 법 제43조의 3 에 따른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도시가스사업 자"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인천권리를 위한 투 자액이 사업개시일도·시설포모 및 매출액 등 의 유사한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인천권리를 위한 풍심 투자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도시 가스사업자를 말한다.</p> <p>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산업자원부장 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인천권리투 자 대상자를 규정함 - 최근 3년간 인천권리투자액이 사업개시일 도·시설포모·매출액 등이 비슷한 다른 도 시가스사업자보다 낮은 경우로 규정</p> <p>○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기스광급사설설치자에 대 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인천권리에 관</p>

법률 제정·개정·시행	개 성 안	개 성 사 유
	<p>39조의5에서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에게 편의를 준용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징수 및 민강명령</li> <li>2.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명령</li> <li>3. 법 제27조제2항·진단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이전,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가스의 배기명령</li> <li>4.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의 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징수 및 통한 당시 고장에 의한 안전관리자 신임기간·인정의 승인</li> <li>5.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의 해임요구</li> <li>6. 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지의 관고</li> <li>7.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사실통보의 징수</li> <li>8. 법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li> </ol>	<p>한 권한을 가스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전현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p>

한 행	개정안	개정사유
	<p>②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자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스공급시설의 신설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신고의 수리</li> <li>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에 관한 권한</li> <li>3.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스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에 관한 명령</li> <li>4. 법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기스공급시설의 이전·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가스의 폐기명령</li> <li>5.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점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의 신임·해임 또는 최종신고의 수리 및 통합 도시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신임기간 연장의 승인</li> </ol>	<p>○ 제1항 신설에 따라 제2항으로 변경</p> <p>○ 제12조의2의 사항과 동록의 수리가 신설신임 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스공급시설의 일부 완공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대구시 간의 사항)</li> </ul> <p>○ 법 개정으로 제12조의4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스공급시설에 대한 개설명령은 지역실장에 맡은 시·군·구에 위임하여 임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대구시 간의 사항)</li> </ul>

한 행	개 정 인	개 정 사 유
	<p>6.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해임요구</p> <p>(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기호의 긴한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진기소시용시신의 장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공사에 위탁한다.</p> <p>④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진기소시용시신의 장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김시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김시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54조 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시신·과태료금액·등을 시민으로 명시하여 이를 낸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p>	<p>○ 법 개정시 당시 위탁업무를 법 제45조제2항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일에서는 이를 따로 개 험</p> <p>○ 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문구 정리</p> <p>○ 문구조정</p> <p>○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명확히 함</p>

현 행	개 정 인	개 정 사 유
	<p>의전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전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u>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민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u></p> <p>④ <u>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민행 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기준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기준 하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을 별표 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⑤ <u>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장으로 정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영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 제3항"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한 위민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각 시·도 별로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 된 부과기준을 마련함</li> <li>○ 위민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에 따라 기종 차분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금액범위를 정함</li> <li>○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세워징수권사무처리규칙 에 준하도록 함</li> </ul>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전문개정 1998. 9. 14.  
조례 제2840호]

개정 1999. 1. 11. 조례 제236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가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기타 소속 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의 권한 중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북부출장소장이 관할하는 시·군에 한하여 별표 2와 같다.

③ 도지사의 권한 중 의회사무처장·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② 북부출장소장은 북부출장소장이 관할하는 시·군에 한하여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규정에 준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위임처의 증지) 북부출장소장 및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실과	일련번호	위 임 사무 명	근거 법 규
총무과	1	○ 행정사 자격확인 및 확인서 교부	행정사법부칙 제2조 동법시행령부칙 제3조
경제정책과	1	○ 대규모 첨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개설등록 (매장증설등록을 포함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	• 영업개시등의 신고	동법 제11조
	3	• 대규모 첨포개설자의 지위승계	동법 제12조
	4	• 매장분양에 따른 관리자의 신고 (법제13조제2항제1호의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 제32조의 허가권한을 제외한다)	동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5	• 개설등록증의 본경교부등	동법시행규칙 제8조
	6	• 등록의 취소등	동법 제15조
	7	• 대규모 첨포개설자등에 대한 권고	동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제5항 내지 제8항을 제외한다)
	8	• 공공법인등의 판매업에 대한 권고	동법 제22조
	9	• 시정명령	동법 제23조
	10	○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추천등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3항

소관실과	일련번호	위 일 사무 종	근거 법규
공업지원과	25	• 동 사업자등의 안전관리자 선·해 임신고 수리	동법 제14조
	26	•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및 회수령령	동법 제22조제2항
	27	• 동 사업자등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령령	동법 제32조
	28	• 동 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관리 업자등에 대한 조정령령	동법 제34조
	29	• 동 사업자등에 대한 각종 보고·점 사등	동법 제35조
	30	• 동 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동법 제48조
	31	• 동 사업자등에 대한 허가기준 고 시의 제정 및 개정 (국단·도시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32	• 가스용품의 수입신고 미필업소에 대한 처분	동법 제21조, 제8조
	33	• 원한의 위험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의 제정 및 개정	동법 제41조
	34	• 시설용품의 수거	동법 제36조
	35	• 동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처분	동법 제8조의2
	36	•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동법 제10조
		○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소관실과	일련 번호	위 일 사 두 명	근거 법 규
공업지원과	37	•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
	38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수리·개선·이전 및 사용정지 또는 제한령령등	동법 제27조제2항, 제3조
	39	• 타인토지의 일시 사용허가	동법 제32조
	40	• 타인토지의 지하사용허가	동법 제33조
	41	•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	동법 제34조
	42	• 타인소유 식물의 벌채·이식허가	동법 제36조
	43	• 조정신청수탁	동법 제38조
	44	• 위일사무에 대한 과정금 부과	동법 제10조
	45	• 위일사무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동법 제54조
	46	•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공사 계획 승인업체·가스사용시설의 일사두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검사실적·검사점검·처분 및 사후 관리	동법 제42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47	• 가스사용시설의 개선령령 및 안전 관리대행 규정 승인	동법 제28조
	48	•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성 향상 계획 관련사무 (환경명령등)	동법 제27조의2
	49	• 가스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무 (평가결과보완 조치등)	동법 제30조의4

##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

### □ 폐지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위임근거가 없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등에서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마련 시행하는 사항을 불필요하게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등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등조례 폐지 ”

### □ 폐지조례안 : “ 별첨 ”

### □ 기타참고사항

- 양주군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 41조,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34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제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5조,제16조
- 경기도사무위임조례